대학평의원회 회의록(4차)

1. 개최일시 : 2018. 1. 22(월) 16:00

2. 개최장소 : 중원대학교 (교무회의실 MI310)

3. 의원회 구성인원

<table>
<tr><td>장지홍(의장)</td><td>이연숙(부의장)</td><td>이형우(의원)</td><td>김철수(의원)</td><td rowspan="2">교원</td></tr>
<tr><td>불참</td><td>참석</td><td>참석</td><td>참석</td></tr>
<tr><td>유태식(의원)</td><td>최상호(의원)</td><td>최준열(의원)</td><td>황유석(의원)</td><td rowspan="2">직원</td></tr>
<tr><td>참석</td><td>참석</td><td>참석</td><td>불참</td></tr>
<tr><td colspan="4">최우석(의원)</td><td rowspan="2">학생</td></tr>
<tr><td colspan="4">불참</td></tr>
<tr><td colspan="2">문순권(의원)</td><td colspan="2">김동현(의원)</td><td rowspan="2">외부인사</td></tr>
<tr><td colspan="2">불참</td><td colspan="2">불참</td></tr>
</table>

4. 회의안건

가. 학부 학칙개정(심의)

나.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자문)

5. 회의내용

가. 개 회

■ 총 의원 11명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이연숙	

나. 안건1) 학부 학칙개정 : 심의통과

■ 특이사항 없음으로 원안 통과로 전원 일치 함.

입안부서	제정(개정)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결과
학사팀	2018학년도 교육조직반영 자구수정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사항반영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① 우리 대학교에 <u>인문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의료보건대학, 항공대학, 예술학부, 체육학부, 교양학부</u> 및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평생학습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평생학습대학원의 학칙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대학과 학부에 설치하는 <u>학과의</u>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학기)** ①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u>나누고,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설치된 과정의 학기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u>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학사운영의 필요에 따라 방학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습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① 우리 대학교에 <u>사회문화대학, 융합과학기술대학, 의료보건대학, 항공대학, 상생교양학부, 글로벌언어교양학부</u> 및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평생학습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평생학습대학원의 학칙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대학과 학부에 설치하는 <u>학과(전공)의</u>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학기)** ①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u>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학사운영의 필요에 따라 방학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습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u>④ 제1항의 학기는 학사운영상 필요</u>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입안부서	제정(개정)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결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신 설>	한 경우 매 학기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하되,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3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전과허용확대		⑤ 제4항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같은 학기 내에서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자구수정	**제22조(전과)** ① 전과는 입학 후 3학기 초부터 5학기까지 매 학년도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옮기려는 모집단위 100분의 20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전과)** ① 전과는 입학 후 3학기 초부터 7학기까지 매 학년도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옮기려는 모집단위 100분의 50범위에서 재학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자구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상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이대은	

입안부서	제정(개정)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결과
	정 수강신청 학점변경 자구수정 이동수업 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학과로는 전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u> ③ 전과한 자는 전과가 허용된 <u>학과</u>,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u>취득학점</u> 및 성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수는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u>최대 18학점까지</u>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제외한다. ③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2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제2항의 취득 기준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최대 신청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학사 경고자에게는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수업의 방법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u>계절수업,</u>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수업은 산업	<u>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과로는 전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u> ③ 전과한 자는 전과가 허용된 <u>학과(전공)</u>,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u>취득한 학점</u> 및 성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수는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u>최대 18학점(간호학과, 항공운항학과는 최대 21학점)까지</u>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제외한다. ③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2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제2항의 취득 기준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최대 신청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학사 경고자에게는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수업의 방법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u>계절수업, 집중수업,</u>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수업은 산업	

의 장	부의장	간 사

입안 부서	제정 (개정) 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 결과
	신설	체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체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구수정	<신 설>	**제36조의2(이동수업)** 대학 소재지 출석수업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이동수업의 대상·기준·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내에서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이동수업을 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40조(복수전공)** ① 학생은 소속 학과의 전공분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다른 학과의 전공 분야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학과는 다른 학과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③ 복수전공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해당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④ 복수전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복수전공)** ① 학생은 소속 학과의 전공분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다른 학과의 전공 분야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항공운항학과는 다른 학과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③ 복수전공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해당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④ 복수전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융합전공신설	**제40조의2(부전공)** ① 재학 중 제1전공 분야 이외의 전공분야를 부전공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의2(부전공)** ① 재학 중 제1전공 분야 이외의 전공분야를 부전공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6(융합전공)** ① 재학 중에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학과가 융합하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입안 부서	제정 (개정) 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 결과
			여 교육과정을 편성, 설치한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자구수정 학생회 입후보 자격완화	**제44조(졸업학점과 졸업요건)** 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1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점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다만 조기졸업자와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2.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이수한 교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4. 학과(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을 포함한다.) 별로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등의 필요한 평가에 합격한 자. 5. 중원(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 한 자. 6. 삭제 7. 삭제 ③ 이수구분별 학점취득 등 졸업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생회의 설치)**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개교 정신과 교육목표에 따르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학생회를 둔다.	**제44조(졸업학점과 졸업요건)** 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1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점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다만 조기졸업자와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2.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이수한 교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4. 학과(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을 포함한다.) 별로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등의 필요한 평가에 합격한 자. 5. 중원(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 한 자. 6. 삭제 7. 삭제 ③ 이수구분별 학점취득 등 졸업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생회의 설치)**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개교 정신과 교육목표에 따르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학생회를 둔다.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입안 부서	제정 (개정) 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 결과
		② 학생회의 정·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을 취득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의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② 학생회의 정·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을 취득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의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단,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아 재선을 진행할 경우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7학기 이하의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개정 2018. 00. 0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단과대학이 변경된 학과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8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학과, 한국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찰행정학과, 법무법학과 재적생은 각각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한국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찰행정학과, 법무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식품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식품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입안 부서	제정 (개정) 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 결과
			3.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은 각각 사회문화대학 연극영화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체육학부 경호학과 재적생은 융합과학기술대학 체육학부 경호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8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이공대학 의약바이오학과, 의료공학과,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융합과학기술대학 제약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이공대학 메카트로닉스학과 재적생은 항공대학 항공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과 존속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공대학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재적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융합과학기술대학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2020학년도(2021년 2월말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융합과학기술대학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또는 소방방재공학전공으로 선택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재적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융합과학기술대학 레저스포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2020학년도(2021년 2월말일)까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입안 부서	제정 (개정) 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 결과
			지 존속한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융합과학기술대학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또는 스포츠산업전공으로 선택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③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희망하나 학과 존속기간까지 졸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변경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단과대학/학부	2018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10
	한국학과		1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보육상담학과		25
	경영학과		25
	국제통상학과		25
	경찰행정학과		40
	법무법학과		22
	연극영화학과		33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30
	제약공학과		30
	식품공학과		28
	생체의공학과		35
	컴퓨터공학과		35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25
		소방방재공학전공	25
	말산업융합학과		25
	산업디자인학과		30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25
		스포츠산업전공	25
		경호학전공	25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65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30
	뷰티헬스학과		3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정비학과		35
	항공서비스학과		40

의 장	부 의 장	간 사

입안 부서	제정 (개정) 이유	현 행	개 정 안	심의 결과
			단과대학/학부: 2018학년도 — 학과: 항공기계공학과, 입학정원: 40 학과: 항공재료공학과, 입학정원: 40 계: 4개 단과대학, 26개 학과, 2개 학부 5개 전공, 968	

다. 안건2) 2017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자문) : 특이사항 없음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으로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하여 자체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편성 내용

가. 수입 (금액단위 : 천원)

항목(관)	추경예산 편성 주요 내용	2차 추경예산액	1차 추경예산액
등록금 수입	- 본예산 대비 등록 학생수 증가 (3417명 > 3382명)로 인한 학부 수업료 감소 (1억6천) - 본예산 대비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수입 감소 (1억5천)	26,280,359	26,603,424
전입 및 기부수입	- 법인전입금 : 경상비 증액 (14억) - 장학관련 수입 감소 (1억9천)	16,172,708	14,790,319
교육 부대수입	- 미실행 사업, 항공운항 실습비 감소 (27억)	6,088,190	8,639,795
교육외 수입	- 잡수입 : 시설 관련 수입, 기타 잡수입 증액 (1.7억)	319,980	126,700

나. 지출 (금액단위 : 천원)

항목(관)	추경예산 편성 주요 내용	2차 추경예산액	1차 추경예산액
보수	- 회계별 집행 유동성에 따른 예산 증액 (4억7천)	22,012,671	21,536,308
관리 운영비	- 집중호우 피해복구, 전기료 예산 증액 (13억7천) - 구조개혁 컨설팅, 말산업 관련 예산 증액 (6억)	8,921,271	7,128,335
연구학생 경비	- 교내장학 (장학대상 인원 감소) 예산 감액 (8억) - 학생지원비 : 미사용 사업비 (외부 지원 사업, 비교과 프로그램) 감액 (3억)	17,015,948	18,214,949

의 장	부 의 장	간 사

교육외 비용	- 잡손실 (신축생활관 인터넷 해지위약금, 2016학년도 전형료 반환) 증액 (0.6억)	294,747	280,000
투자와 기타 자산	- 교육용 기자재 확보 기부금(교직원 기부) 증액 (0.6억)	309,000	280,000
고정자산 매입지출	- 기계기구, 집기비품 구입비 감액 (6.3억)	1,329,937	1,966,986

2017회계년도 교비회계 총괄표(추경)

기관명 : 중원대학교 ※수입 = 지출

수입						지출					
관	별	2차 추경예산액		1차 추경예산액		관	별	2차 추경예산액		1차 추경예산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운영수입	등록금수입(5100)	26,280,359	52.7%	26,603,424	53.0%	운영지출	보수(4100)	22,012,671	44.1%	21,536,308	42.9%
	전입및기부수입(5200)	16,172,708	32.4%	14,790,319	29.4%		관리운영비(4200)	8,921,271	17.9%	7,128,335	14.2%
	교육부대수입(5300)	6,088,190	12.2%	8,639,795	17.2%		연구학생경비(4300)	17,015,948	34.1%	18,214,949	36.3%
	교육외수입(5400)	319,980	0.6%	126,700	0.3%		교육외비용(4400)	294,747	0.6%	280,000	0.6%
							전출금(4500)				
							예비비(4600)			821,662	1.6%
	계	48,861,237	97.9%	50,160,238	99.8%		계	48,244,637	96.7%	47,981,254	95.5%
자본및부채수입	투자와 기타 자산(1200)	78,002	0.2%	78,002	0.2%	자본및부채지출	투자와 기타 자산(1200)	309,000	0.6%	280,000	0.6%
	고정자산매각수입(1300)						고정자산매입지출(1300)	1,329,937	2.7%	1,966,986	3.9%
	유동부채입금(2100)						유동부채상환(2100)				
	고정부채입금(2200)						고정부채상환(2200)				
	계	78,002	0.2%	78,002	0.2%		계	1,638,937	3.3%	2,246,986	4.5%
미사용전기이월자금	기초유동자산(11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기말유동자산(1100)				
	기초유동부채(2100)						기말유동부채(2100)				
	전기이월자금 = (기초유동자산-기초유동부채)	954,335	1.9%				차기이월자금 = (기말유동자산-기말유동부채)	10,000	0.0%	10,000	0.0%
자금수입총계		49,893,574	100.0%	50,238,240	100.0%	자금지출총계		49,893,574	100.0%	50,238,240	100.0%

의 장	부의장	간 사

6. 폐회 : 2018년 1월 22일(월) PM 17:00에 폐회하다.

교원	장지홍	(의장)
교원	이연숙	(부의장)
교원	이형우	(의원)
교원	김철수	(의원)
직원	유태식	(의원)
직원	최상호	(의원)
직원	최준열	(의원)
직원	황유석	(의원)
학생	최우석	(의원)
외부인사	문순권	(의원)
외부인사	김동현	(의원)

의 장	부 의 장	간 사